

[별지 제37호의2 서식] 삭제 <2017. 10. 19.>

작성방법

1. 수입폐기물 관리대장은 신고증명서 발급번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①란 중 폐기물의 종류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HSK No.에는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3. ②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수입 및 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수입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4. ③란 및 ④란의 처리방법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5.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사업자명을 적습니다.
6.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상태는 고체 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 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